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12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24일

나. 제출자 : 신현도 의원 외 7인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4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2. 6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현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60세 이하인 통장의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
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노 상 옥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을 현행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-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년층의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해 온 노령층은 지역사정에 밝아 동의 행정사무에 협조하기 쉽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갖고 현직에서 은퇴한 노령층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나이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신현도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-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60세 이하인 통장의 나이 제한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을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나.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19조

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불필요

다. 합 의 : 자치행정과 합의

라. 기 타 : 조례안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장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후단 중 “개폐”를 “개편 또는 폐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1회에 한”을 “1회에 한정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60세”를 “30세 이상 65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당;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하여야”를 “위촉 해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60세”를 “65세”로, “도래한”을 “도래하였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통·폐합하는 때”를 “통폐합할 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9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”를 “또는 반장이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공부”를 “공문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·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,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. 통·반을 <u>개폐</u>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3조(통·반의 명칭 및 구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<u>개편</u> 또는 <u>폐지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통장의 임기)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</u>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통장의 임기) ----- ----- <u>1회에 한정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</p>	<p>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

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주민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

2. 3. (생략)

③반장은 해당;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

④구청장은 통장을,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

6.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·반 조정으로 통·폐합하는 때

7. (생략)

제7조(임무) ①통·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.

--- 따라 -----.

1. -----
----- 30세 이상 65세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해당 -----

-----.

④-----

----- 위촉 해제하여야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-- 65세 -----
----- 도래하였을 -----

6. -----
----- 통폐합할 때

7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임무) ①-----

-----.

1. ~ 8. (생략)

9.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

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·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0조(편의제공) 통·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,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따라 -----
--- 그 밖에 -----

②----- 또는 반장이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-----

-----.

제10조(편의제공) -----

----- 공문서

-----.

제11조(수당 등) ①-----
--- 범위-----

-----.